##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철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346 발의연월일: 2020. 9. 29.

발 의 자: 장철민・이상헌・안호영

최종윤 · 임오경 · 야진비

양이원영 · 윤미향 · 송옥주

홍영표 · 노웅래 의원

(11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는 노동조합 전임자에 대한 사용자의 임금 지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노사교섭이나 고충처리 등노동조합의 유지·관리업무를 하는 경우에는 근무시간으로 인정하고임금을 지급하는 "근로시간 면제 제도"를 인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는 공무원에 대한 근로시간 면제 제도 근거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공무원은 노동조합과 관련된 업무를 하는 동안에는 어떠한 업무를 하더라도 보수를 받을 수 없어 공무원의 노동권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한 것이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공무원은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정부교섭대표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이 설립된 단위별로 조합원 수 등을 고려하여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보수의 손실 없이 정부교섭

대표와의 협의·교섭 등의 업무를 할 수 있게 함으로써 공무원 노동 조합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2 신설).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근로시간 면제 한도) ① 제7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은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정부교섭대표가 동의하는 경우 노동조합이 설립된 단위별로 조합원 수 등을 고려하여 제2항에 따라 결정된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보수의 손실 없이 정부교섭대표와의 협의·교섭, 고충처리 등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업무와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동조합의 유지·관리업무를 할 수 있다.

② 근로시간 면제 한도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에 따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심의·의결한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되, 3년마다 그 적정성 여부를 재심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현 행 <u>&lt;신 설&gt;</u>	제7조의2(근로시간 면제 한도) ① 제7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은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정부교섭대표가 동의하는 경우노동조합이 설립된 단위별로조합원 수 등을 고려하여 제2항에 따라 결정된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범위에서 보수의 손실 없이 정부교섭대표와의 협의·교섭,고충처리 등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업무와 건전한노사관계 발전을 위한노동조합의 유지·관리업무를 할 수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동조